

<2011 37~42> 바젤 협약 지문

<1문단>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국제법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조약과 국제 관습법의 정의가 제시된다. 둘다 대충 법이니까 **뭐가 다른지에 집중하면**, 조약은 말 그대로 조약을 맺는 명시적인 합의고, 국제 관습법은 딱히 뭘 체결하고 하는 게 아닌 그냥 보편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다. 명시적이냐 아니냐가 구분 기준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한 결정이면, 보통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지, '말 안 들으면 잡으러 갑니다'가 아니란다. **평가원이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말하는 걸 보면 안 일반적인 케이스를 다루려 한다는 것 정도는 쉽게 보여야 한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역시나 '그런데'로 이어진다. 바젤위원회가 위에서 말한 경제 관련 국제기구임은 확실하다. 그런데, 분명히 보통 권고적이었는데 비회원의 국가에서 '도' 엄격히 지켜진단다. **이상해야 한다.** 권고적인 것이니 애당초 회원국도 안 지켜도 되는 것일 텐데, 비회원국마저도 엄격히 지키니 말이다. 마치 '규범적'인 것처럼. **이 요상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이 지문의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재가 대체 뭘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지키는지 궁금해야 한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법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위반에 대한 제재로 확보된다. 벌금이니 징역이니 모두 그런 것 아닌가. 그런데, 이 경우에는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닌,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이 저 바젤위원회의 규제를 비회원국들마저 지키게 한 것 같다. 일종의 규범적 현실이 나타나는 이유는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때문인 것이다. **그럼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이 대체 뭘데? 우리는 또다시 궁금해야 한다.**

<2문단>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이 뭘지커녕 뜬금없이 어려운 말이 잔뜩 나오고 있다. **쫄지 말고, 화제가 바뀐 것을 인지하자.** 은행의 재무 건전성은 딱 봐도 좋은 것이다. 은행이 건전해야 믿고 돈을 맡길 것 아니겠나. 그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이라 한다. 그렇다면 자기자본은 많으면 많을수록 재무 건전성 상 좋다는 걸 파악했어야 했다. 은행의 재무가 건전하면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이 보호된단다. 그렇겠지 뭐. 우리가 볼 건 대충 '자기자본=좋은 거' 정도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BIS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BIS비율이 '적어도' 8%여야 한다는 것을 보면 BIS비율은 높을수록 좋다는 것 같다. 자기자본은 좋은 거니까 당연히 분모에 위치해 있다. 그렇다면 이름부터 위험한 녀석인 위험가중자산은 당연히 재무 건전성에 좋지 않은 녀석일 거라는 것 또한 보여야 한다.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자기자본 = 기본자본+보완자본+단기후순위채무 이다. 다 재무 건전성에 좋은 녀석들이지. 반면 위험가중자산은 자기자본처럼 쉽게 구해지지 않고, 보유자산×위험가중치(신용위험)를 구해 합하여야 한다. 자기자본은 쉽다. 위험가중자산은 어렵다. 무엇이 부연 상술될지 뻔하지 않은가?

위험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는 말 그대로 신용(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위험을 반영하는 것이다.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인 것을 보니, OECD 국가의 국채는 전혀 위험하지 않고, 회사채는 딱 그 가격만큼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당연히 OECD 국가의 국채가 회사채보다 훨씬 안전하다. 국가가 쉽게 망할까 회사가 쉽게 망할까?

또 해야 했던 행위는, 바로 전 문장의 위험가중자산 계산식에 이걸 적용해 보는 것이다. OECD 국가의 국채는 위험가중자산에서 0원으로 계산되고, 회사채는 100억짜리면 100억만큼 반영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변화다. 왜 변했는지와 무엇이 변했는지를 파악하자. 지금까지는 신용위험만 따졌는데 이제는 시장 위험도 따지란다. 배경지식 없이 이해하기 힘들다. 금융자산(예금,주식,펀드 등. 궁금하면 찾아보자)의 가격 변동이 시장 위험인갑다 하자. 뭐 어쨌든, 위험가중자산 계산식에 시장 위험 파트도 들어왔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들을 비교하고 있다. 무엇이 다른지 보자. 신용 위험은 무조건 100% 아니면 0%로 획일적이었지만, 시장 위험의 측정엔 허락만 받으면 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르다. 시장 위험 구하는 법은 알려주지 않는 것을 보니 저 차이점을 빼곤 딱히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어쨌든 우리는 드디어 자기자본과 위험가중자산 구하는 법을 알았으니, BIS비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3문단>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II' 협약이 도입되었다.

또 변화다. 근데 왜 변했냐는 별로 안 중요해 보인다. 그냥 대충 금융 혁신 어쩌고니까.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 변했는가' 이다. 눈에 볼을 키고 변한 것을 찾아라. 변하지 않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어짜피 바젤 I과 똑같은 테니까 말이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바뀐 것은 뭘까. 자산의 유형 반영? 글을 다시 읽자.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은 원래 고려되었다.(국채나 회사채나) 달라진 것은 신용도가 고려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뭐 어떻게 고려되는지는 아직 모른다. 그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용도 밖에 없을 뿐이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바뀐 것이 뭘까. 원래 신용 위험 측정은 시장 위험과 달리 은행 맘대로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표준 모형과 내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단다. 딱 봐도 표준 모형은 바젤위원회가 만든 측정 방식이고, 내부 모형은 은행 맘대로 측정하는 것이라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시장 위험 측정 방식과 동일한)

표준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차이점인 신용도!!가 보였어야 한다. 원래 OECD국가 국채는 그냥 0%였는데, 이제는 0~150%란다. 신용도와 연결지어 생각하면, OECD 국가 국채여도 신용도가 별로면, 즉 곧 망할 것 같은 나라라면 150%까지도 때릴 수 있고, 아주 믿음직해야 0%로 처리해 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는 아무리 안전해도 20%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다. 썩어도 준치라고 여전히 OECD 국채가 회사채보단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가중치를 낮게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걸 위험가중자산, 즉 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자산을 계산하는 것이니, 믿음직한 자산일수록 작게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이해가 어려웠던 친구들을 위해 친절한 평가원이 예시를 들어주고 있다. 여러분에게 나의 완벽한 해설이 있으니 예시 따위 필요 없길 바란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문장 전에 예측한 내용이 역시 맞았다. 아까 그거 예측 맞다. 다 읽고 알면서 한 말 아니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비율이 ⑥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뭣이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비율이 뭔데. 이거 BIS 비율이잖아.(어휘치환) 8%만 넘으면 된다고. 근데 이게 너무 경직적인 게 싫었나보다. 자기들이 봤을 때 좀 불안불안한 은행이면 기준을 더 뻥뻥하게(8%를 초과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니 당연히 뻥뻥해지는 것이다. 가만 뒤도 알아서들 다 8% 넘겼으면 애당초 규제할 필요도 없겠지) 제시해, 더 안전한 은행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4문단>

최근에는 '바젤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채무가 제외되었다.

또 변화다. 또 뭐가 바뀌는지 불을 키고 찾자.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채무가 빠졌단다. 음 BIS 비율 맞추기 더 어려워졌겠군. 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면 아주 훌륭한 학생이다. 왜인지 모르겠다면 생각하자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원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만 보더니, 이제는 자기자본의 일부인 기본자본의 비율도 따지겠단다. 문제에서 내기 딱 좋아 보인다.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의 비율 규제는 이제 2가지이다.

이게 왜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애당초 기본자본이 뭔질 안 알려줬으니, 기본자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해가 안되면 정보처리라도.** 정보처리 이미 잘 했으니 그저 그렇구나~ 하며 넘어가면 된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과연 그렇군요.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드디어 뜬금없는 바젤협약 1,2,3이 끝났다. 중간에 이상한 게 끼어들었다 해도, 우리의 공공증은 여전해야 한다. 그래서 씨바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이 대체 뭔데??

바젤 협약을 많은 국가에서 지키고,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가입했다. 예 뭐 그러세요.. 가끔 선지에서 이런 지엽적인 걸 물어보니, 대충 지문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이 정보가 있었다 정도만 체크하자.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원하는 내용이 나왔다. 비회원국마저 엄격히, 한국은 심지어 법으로까지 규정하여 지키려는 이유가 뭘까?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㉔ 받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야 신뢰가 만드는 구속력이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BIS 비율은 은행이 안전하다는 신뢰의 징표이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받지 못하면 왕따를 당한다. 바젤위원회가 총 들고 지키라 한 적 없지만, 국제적으로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던 거다.

<5문단>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어쨌든 저렇게 말해도 알아서들 지킬 거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아까 회원국은 스물 몇개라더니, 100개가 넘는 국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면 국제 거래에서 은행의 신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알 수 있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㉔ **말랑말랑한 법(soft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런”현실을. ‘이러한’은 엄밀히 담화표지는 아니지만, 명백히 앞뒤 문장을 이어주고 있으니 그냥 담화표지라 하겠다. **담화표지 나왔으니 연결 관계 파악**해야 한다. 그럼 ‘말랑말랑한 법 = 이런 현실’인 게 보인다.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은 당연히... ‘이런 현실’이 뭔데?

어휘 치환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는 내 눈에 무엇으로 보여야 한다? 당연히 비회원국이다. 즉 말랑말랑한 법의 의미는, 비회원국도 자발적으로 지키는 법인 것이다. 총 들고 지키라고 시켜야 지키는 게 아니라, 알아서들 지키는 것이니 말랑말랑하다고 하는 것 같다. 말랑말랑. 생각하자 제발~~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㉔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위반에 대한 제재로 강제성을 얻으니, 제재를 받지 않을 비회원국은 당연히 지킬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딱딱한 법이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그렇군요.